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78
----------	------

2016. 4. 25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- 2016. 3. 29 남창진 의원 외 10인 발의 (2016. 3. 30 회부)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규정되어 있는 “주거약자”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“사회경제적 약자”의 정의 중 “주거약자”의 정의를 개정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첨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29일 남창진 의원의 발의로 2016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- 이 조례 제2조제2호나목은 「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」 제2조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‘주거약자’의 정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으나, 「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」 개정에 따라 이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 전 ‘주거약자’의 정의를 이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. 다만, 개정된 인용 법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.

개정 전 「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」

제2조(정의)

2. "주거약자 등"이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로서,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.

가.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

나.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 중 국가·서울특별시·SH공사 또는 LH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

다.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

라.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〈신 · 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〈신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〈신설〉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<u>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1인가구 등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〈신설〉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<u>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 중 국가·서울특별시·에스에이치(SH)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<u>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<u>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1인가구 등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<u>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